

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3일
북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엄셋별, 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2차 북지건설위원회(2025년 6월 2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관내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 및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통해 금천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안전한 대중교통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3) 구민의 권리와 의무(안 제4조)
- 4)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(안 제5조)
- 5) 대중교통 안전 및 육성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- 6)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금천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가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) 구민의 권리와 의무(안 제4조)

라)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(안 제5조)

마) 대중교통 안전 및 육성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
-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,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- 친환경 교통수단, 대중교통 환경 개선등을 통한 지원 사항 마련

바)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(안 제8조)

-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

3)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구민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마련되었으며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 다만, 대중교통 체계 지원 사항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요구된다 보며 교통비 지원 등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(협의 및 조정)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